

## 시민사회 공동성명: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디지털 감시 기술 사용은 반드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은 세계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전 세계 정부의 공조와 대규모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공격적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대폭 확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각국 정부가 세계적인 팬데믹에 맞서 사람들을 추적·감시하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인권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기술은 공중보건 소식을 전파하거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해야만 한다. 그러나 휴대폰 위치정보 접근 권한 획득 등 정부의 디지털 감시 권한이 강화되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위협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모든 공중보건 대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관련 조치는 차별이 발생할 위험을 초래해 이미 소외된 공동체에 더욱 부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예외적인 시기라 할지라도 인권법은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로 인권 제도는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다른 권리들 사이의 균형을 신중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를 쉽게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인권을 보호할 때 공중보건을 증진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조치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인권 보호조치에 상응하는지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애를 보여줄 기회다. 팬데믹 상황에 맞서, 인권 기준과 법 질서에 따르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각국 정부의 결정이 앞으로의 세계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19 대응으로 디지털 감시를 강화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 조건에 따를 것을 모든 정부에 촉구한다.

1. 코로나 19 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하는 감시 조치는 합법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어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적절한 보건 당국이 설정한 정당한 공중 보건상의 목적에 따라야 하며 사회적 요구를 비례적으로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정부는 감시 조치 시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조사받을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추후 수정·철회·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19가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의 명분이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2. 정부가 모니터링 및 감시 권한을 더욱 확장하는 경우 이러한 권한은 한정된 기간에만 유효해야 하며, 현재의 코로나 19 위기 대처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지속될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 19가 무기한 감시의 명분이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3. 정부는 건강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보존·집계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이것이 코로나 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수집·보존·집계한 정보는 코로나 19에 관련된 한정된 범위에서 한정된 기간에만 사용해야 하며 상업적 또는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코로나 19가 개인의 사생활권을 도려내는 명분이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4. 정부는 수집된 개인정보와 해당 정보의 수집·전송·처리·저장에 관련된 모든 장치,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등 사람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보가 익명으로 저장된다는 주장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익명으로 처리되는 방법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사람들의 디지털 안전을 저해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5. 코로나 19 대응책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 등의 디지털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도구가 유발하는 인종적 소수자, 빈곤층 및 기타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위험을 유념해야 한다. 이들의 요구사항이나 현실적인 생활이 대규모의 데이터 집합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왜곡될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사회 내의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권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6. 정부가 다른 공공 또는 민간 주체와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협정의 존재 및 이것이 사생활 및 인권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문서로 작성되고, 소멸시효 조항과 공적 감시 및 그 외의 안전 조치를 기본으로 포함해야 한다. 정부의 코로나 19 대책과 관련된 사업들은 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다른 사업 및 상업적 이해관계의 개입을 모두 차단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명목으로 정부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제 3자에게 공유하는지를 은폐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7. 모든 대응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 및 안전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코로나 19 와 관련해 감시를 확대하는 경우 이를 보안 또는 정보기관이 주도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독립 기관으로부터 효과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은 코로나 19 와 관련된 모든 정보 수집·집계·보유·사용 조치에 대해 알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감시 대상이 된 개인은 반드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8. 정보 수집이 포함된 코로나 19 대응을 할 때는 관련 이해당사자, 특히 공중보건 부문 전문가와 가장 소외된 집단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